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4호 2024. 1. 22.(월)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○ 남원시 공고 제2024-155호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-----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4

남원시 공고 제2024 - 155호

「남원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2일

남 원 시 장

1. 제정 이유

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남원문화재단 목적 및 대상 사업 규정 (안 제1조~안 제4조)
- 나. 재산, 정관, 임원, 이사회 운영사항 등 규정 (안 제5조~안 제10조)
- 다. 수익사업, 운영 재원, 지도·감독 등 규정 (안 제11조~안 제17조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1. 22. ~ 2. 11. 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문화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(우) 55738 /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문화예술과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이메일(anenjn@korea.kr), 팩스(063-620-6707),
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지원팀(☎063-620-6836)으로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불 입 :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

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4. 1. 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

1. 제정 이유

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남원문화재단 목적 및 대상 사업 규정 (안 제1조~안 제4조)
나. 재산, 정관, 임원, 이사회 운영사항 등 규정 (안 제5조~안 제10조)
다. 수익사업, 운영 재원, 지도·감독 등 규정 (안 제11조~안 제17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나. 그 밖의 사항
1) 입법예고
- 기 간: 2024. 1. 22. ~ 2024. 2. 11.(20일간)
- 결 과:
2) 비용추계서: 첨부
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남원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
2. 문화·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
3. 문화·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
4. 국가·전북특별자치도·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문화·관광시설 위탁 및 문화·관광사업 운영
5. 그 밖에 시의 문화·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

제5조(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, 기부금,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

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의 운영
7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8. 정관의 변경
9. 해산에 관한 사항
10. 공고의 방법
11.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7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④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되,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1. 당연직 이사: 이사장, 시의 재단 업무 소관 국장

2. 선임직 이사: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

⑤ 그 밖에 대표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면(任免)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이사회 구성 및 운영)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재원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, 출연금, 기부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3조(예산·결산 등)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

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·감독 등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.

제15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공유재산 사용허가 등)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재산 및 시설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.

제17조(운영규정) 재단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산의 경과조치)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.

제3조(설립준비)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 준비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붙임

관련 법령

□ 지역문화진흥법

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0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)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

제21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·운영)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 범위
2. 재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21. 6. 22.>

1.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지원
2.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
3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4.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

5.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업무
6.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
7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재정수반요인

- 남원문화재단 운영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.

○ 관련조문

- 제5조(재산의 조성), 제11조(운영 재원)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비용추계의 전제

- 남원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
- 남원문화재단 수탁 시설운영비 지원

○ 비용추계의 결과

- 연간 예산 계획 : 3,410,000천원 [※ 2024년도 예산]
 - 출연금 : 2,900,000천원
 - 시설운영비 : 510,000천원
- 연도별 예산 추계

(단위:천원)

연	합계	2024	2025	2026	2027	2028
도						
총비용	17,050,000	3,410,000	3,410,000	3,410,000	3,410,000	3,410,000
출연금	14,500,000	2,900,000	2,900,000	2,900,000	2,900,000	2,900,000
시설운영비	2,550,000	510,000	510,000	510,000	510,000	510,000

3. 재원 조달 방안

○ 재원조달계획 : 전액 시비 편성